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외교통일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7월 22일, 정부 제출

나. 회부일자 : **2024년 7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2024년 11월 7일)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년 11월 8일)

상정 · 심사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년 11월 27일)

상정 · 심사 · 의결(수정의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2024년 11월 28일)

상정 · 소위 심사보고 · 의결(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조태열 외교부장관)

한·아프리카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개정안은 한·아프리카재단 임원의 연령 결격사유 기준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미성년자</u>	3. <u>18세 미만인 사람</u>

참고로, 개정안은 정부가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을 대상으로 일괄 정비를 추진하여 국회 7개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법률안¹⁾ 중 하나로, 법령상 자격 취득·직종 요건 등에 관한 연령 제한을 완화하여 청년 세대의 취업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달성하려는 내용임.

1) 정부는 제21대국회인 2023년 11월에 동 8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임기만료 폐기된 바, 제22대국회에 재제출한 것으로, 그 중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8월 28일에, 자격 연령 제한 완화 내용이 포함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4년 9월 26일에 각각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정부 제출 연령 결격사유 완화 법률안>

연번	제출자	제출일	소관부처	개정안
1	정부	2024.7.16 .	문화재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정부	2024.7.19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정부	2024.7.22 .	해양수산부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	정부	2024.7.22 .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5	정부	2024.7.22 .	외교부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6	정부	2024.7.22 .	경찰청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정부	2024.7.22 .	보건복지부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	정부	2024.7.23 .	법무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주요내용 검토

한·아프리카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한·아프리카재단법」에 의해 설립되어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연구 분석을 통해 정치·경제·문화·학술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아프리카국가 간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는 외교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임²⁾³⁾.

2)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3)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단체

2. 생략

재단은 아프리카에 관한 홍보와 차세대 교육, 아프리카지역 및 국가에 대한 조사연구, 그리고 정부의 대(對)아프리카 외교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현행법은 임원의 결격사유⁴⁾ 중 하나로 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4조⁵⁾에 의하면 19세 미만인 사람은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음.

임원의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18세인 사람도 재단의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재단이 행하는 여러 청년교류사업⁶⁾의 규모가 코로나 이전의 참가 인원수를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확장⁷⁾되는 추세이므로, 향후 청년 임원을 활용하여 재단이 수행하는 여러 청년교류사업을 확대·발전시킬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재단의 역대 임원 중 취임 시점의 연령 기준 최연소자가 42세⁸⁾이고, 2018년 재단 설립 이래 5년간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소속의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4) 「한·아프리카재단법」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미성년자
- 4.~6. 삭제

5)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6) 한-아프리카 청년포럼, 모의 아프리카연합(AU) 총회, 한-아프리카 청소년캠프, 한·아프리카재단 청년서포터즈,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YPA) 사업

7) ('19)277명 → ('20)155명 → ('21)318명 → ('22)527명 → ('23.11.)448명

8) 역대 최연소 임원 연령

당연직 이사⁹⁾를 제외한 상근·비상근이사는 교수, 연구원, 전(前) 외교관 등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4명만이 해당 직위를 역임하여 연령 기준을 1년 단위로 완화하여도 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별 법률로 규율되는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재단들의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참고할 수 있음.

<재단 임원 결격사유 관련 입법례>

구분	관련 법률	임원 결격사유
		미성년자 규정 여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¹⁰⁾	×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장 ¹¹⁾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9조 ¹²⁾	×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0조 ¹³⁾	×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법」 제7조 ¹⁴⁾	×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¹⁵⁾	×

직책	성명	임용시 연령
상근이사	김**	42세

9) 「한·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제3조(당연직 이사)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란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및 외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제8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제15조(임원의 임면 등) ④ 시·도지사는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재단은 개정안에 대해 18세인 경우에도 해당 자격 및 직종 등에 당
연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 및 사회참
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입장임.

외교부는 재단 사업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직책인 임원의 연
령 결격사유를 18세 미만으로 낮춤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
여 정부의 청년정책 국정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부합한
다는 입장임.

-
1. 소속 재단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12)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13)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
유가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임명 당시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15)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② 재단의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장 김건)

한·아프리카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연령 제한 및 국적 제한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동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제안자 : 외교통일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한·아프리카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연령 제한 및 국적 제한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동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호 및 제3호 삭제).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u>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u> 2. (생략) 3. <u>미성년자</u>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 ----- ----- -----. 1.·2. (현행과 같음) 3. <u>18세 미만인 사람</u>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 ----- ----- -----. <u><삭제></u> 2. (개정안과 같음) <u><삭제></u>

법률 제 호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 ----- -----
1. <u>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u>	-.
2. (생 략)	<삭 제>
3. <u>미성년자</u>	2. (현행과 같음)
	<삭 제>